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476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4월 9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강감창 의원이 2017년 8월 9일에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」을 2017년 8월 31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친 후 심사하였으나 처리되지 않고 산회되었으며, 이후 제276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심사 보류됨.
- 심사 보류된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280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재상정되었으나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거리가게 상생환경 조성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이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안·의결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전통시장 거리가게를 전통시장과 동일상권에서 상당기간 동안 운영되고 자치구의 관리를 받고 있는 노점으로 정의함(안 제2조)
- 나. 전통시장 상인과 전통시장 거리가게 상인간에 시범사업의 추진에 대한 합의가 된 경우로 지원대상을 한정함(안 제4조)
- 다. 시장은 자치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안 제7조)
- 라. 시장은 시범사업의 종료된 후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음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보도법」, 「식품위생법」, 「소방기본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통시장 거리가게에 대한 관리 및 지역 상권과의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전통시장 거리가게”란 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동일상권에서 상당 기간 동안 운영되고 자치구의 관리를 받고 있는 노점으로서 소규모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전통시장 거리가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「도로법」, 「도로법 시행령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지원대상) ① 시범사업의 대상은 전통시장 상인과 전통시장 거리가게 상인 간에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합의가 된 경우로 한정한다.

② 제1항의 합의의 내용과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신청절차) 전통시장 거리가게 상인은 전통시장 상인과 공동으로 자치구를 통하여 서울시에 시범사업의 추진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6조(대상의 선정) 시장은 전통시장 상인과의 합의 내용, 해당 전통시장의 환경 및 특성, 「소방기본법」, 「식품위생법」, 「소득세법」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.

제7조(시범사업의 지원) 시장은 자치구가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전통시장 거리가게의 시설 및 환경 개선
2. 전통시장 거리가게의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교육
3. 전통시장 거리가게 소재 지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
4.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거리가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평가) 시장은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

사업이 종료된 후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관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.